

의안번호	2205274
의 퇴 인	김기현 의원
회 답 일	2024.12.12.
추 계 번호	24C4866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등록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3억 2,500만원(연평균 4억 6,500만원)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수당 의무지급	465	465	465	465	465	2,325	46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0조(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(補填)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. 다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 ※ (현행법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(補填)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0조(장애아동수당 과 보호수당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2024년 11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이음)의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
- 2024년 전체 등록장애아동 수와 장애아동수당을 미신청한 장애유형별 대상자 수 분포는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장애아동수당 단가는 2024년 기준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등록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¹⁾을 의무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만 18세 이상인 등록장애인의 경우 직권책정을 통해 장애수당을 의무지급하고 있으나, 생계급여 또는

1)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지급되고,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정도, 재가 및 시설 거주에 따라 지급받는 장애아동수당액이 차이가 있음

- 중증장애아동(재가)의 경우 월 22만원, 경증장애아동(재가)은 월 11만원
- 중증장애아동(시설)의 경우 월 9만원, 경증장애아동(시설)은 월 3만원

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해야만 수급 가능

- 현행법에 의하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 포함) 중인 만 18세 이상 20세 이하인 대상의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이음)에서 해당 대상을 추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대상에서 제외

□ 2024년 11월 만 18세 미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등록장애아동²⁾ 중 장애아동수당³⁾을 미신청한 대상은 301명이며, 추계기간 중 전체 등록장애아동 수와 장애유형별 미신청한 대상자 수 분포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-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아동은 90명(재가 80명, 시설 10명), 경증장애아동은 211명(재가 174명, 시설 37명)

□ 장애아동수당을 미신청한 대상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24년 기준 4억 6,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- 장애유형별 장애아동수당 단가는 2024년 기준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미신청한 대상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: 2024년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	세부내역	비용
장애정도	중증장애아동	재가	80명×220,000원×12개월	211
		시설	10명×90,000원×12개월	11
	경증장애아동	재가	174명×110,000원×12개월	230
		시설	37명×30,000원×12개월	13
합 계				46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2) 2024년 11월 만 18세 미만이고,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받는 등록장애아동은 10,615명으로 산출
 -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아동은 5,027명(재가 3,999명, 시설 1,028명), 경증장애아동은 5,588명(재가 4,583명, 시설 1,005명)
- 3) 2024년 11월 만 18세 미만이고,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등록장애아동은 10,314명으로 산출
 -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아동은 4,937명(재가 3,919명, 시설 1,018명), 경증장애아동은 5,377명(재가 4,409명, 시설 968명)

4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등록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3억 2,500만원(연평균 4억 6,500만원)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수당 의무지급	465	465	465	465	465	2,325	46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추계기간 동안 전체 등록장애아동 수와 장애유형별 미신청한 대상자 수 분포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로, 향후 실제 등록장애아동 및 대상자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nabo.go.kr